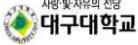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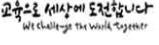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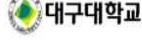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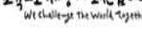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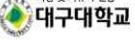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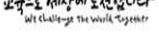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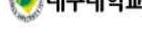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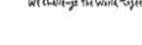


## 정상적 업무 수행에 따른 조합원 피소에 대한 공문 수발신 자료

구분	노동조합(발송)	대학(답신)
1차	<p style="text-align: center;"> <b>대구대학교 노동조합</b> </p> <p>수신자 총장(총무부장) (경유) 제 목 직원의 업무 관련 피소 사건에 대한 대학본부의 공식 입장 답변 요청</p> <p>1. 관련: 노동조합 입장문(2019.10.25.) 2.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2019년 10월 25일에 「정상적 업무수행 결과로 소송 당한 조합원에 대해 대학은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3. 대학본부에서는 2019년 11월 5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과 형식으로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본 건과 관련하여 다음 세가지 사항을 요구하오니, 이에 대한 대학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b>2019년 11월 11일까지</b>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첫째, 대학본부는 정상적 업무수행으로 피소된 조합원에 대하여 진실을 담아 사과하고 위로하고, 둘째, 대학본부는 이 시안에 대하여 강구 가능한 모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셋째, 대학본부가 마련한 해결방안 실현을 위해 해당 조합원 및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p> <p>붙임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입장문 1부. 끝.</p> <p style="text-align: right;">(2019.11.05.)</p>	<p style="text-align: center;"> <b>대구대학교</b> </p> <p>수신자 노동조합위원장 (경유) 제 목 행정직원 피소에 대한 답변 요청의 회신</p> <p>1. 관련: 노동조합 입장문(2019. 10. 25., 포함개시판), 노동조합-110(2019. 11. 05.) 2. 위 호와 관련하여, 가. 대학 본부는 우리 행정 직원의 피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 당시자 및 노동조합과의 상호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건전한 상생관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p> <p style="text-align: right;">(2019.11.11.)</p>
2차	<p style="text-align: center;"> <b>대구대학교 노동조합</b> </p> <p>수신자 총장(총무부장) (경유) 제 목 직원의 업무 관련 피소 사건에 대한 대학본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촉구</p> <p>1. 총무부-2579(2019.11.11.), 노동조합-110(2019.11.05.) 2. 위 호에 의한 「행정직원 피소에 대한 대학본부 공식 답변」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3. 대학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피소 당한 행정직원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대학 측의 답변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5.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본 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학 본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이에 대하여 2019년 11월 29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정리하여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p> <p style="text-align: right;">(2019.11.25.)</p>	<p style="text-align: center;"> <b>대구대학교</b> </p> <p>수신자 노동조합위원장 (경유) 제 목 직원 업무 관련 피소 사건에 대한 대학 본부 회신</p> <p>1. 관련: 노동조합-110(2019. 11. 5.), 총무부-2579(2019. 11. 11.), 노동조합-125(2019. 11. 25.) 2. 대학 본부는 행정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초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3. 미와 함께 교직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 행정의 둠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당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는 교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4. 현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5. 향후 실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p> <p style="text-align: right;">(2019.11.26.)</p>